

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시행 지침

제정 2018.06.01.

1. 근거

- 가. 관계 법령: 사립학교법 제55조, 국가공무원법 제64조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, 제26조,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,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
- 나. 관련 규정: 법인 정관 제67조, 윤리규정 제4조, 교원복무규정 제5조, 제5조의2, 직원복무규정 제9조, 취업규칙 제12조
- 다.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교직원도 그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,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
- 라. 직원은 법인 정관 제67조에 따라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함

2. 영리업무의 금지

가. 영리업무의 개념

(1)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

-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
 - ※ 계속성 기준 : ①매일·매주·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,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,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,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
- 교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, 반드시 총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

나. 교원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영리 업무 구분

(1) 상업·공업·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

-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로 관계없이 그 교직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
- (2) 상업·공업·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·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·지배인·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
 -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
 -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·고문·자문위원 등 직위·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

(3)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

-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·채권 등의 구입,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·물품·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

(4)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

-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·증권·부동산·물품 등 재산상의

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

-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
- 다만, 실비변상적 수당,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

다. 교원복무규정 제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

(1) 교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

-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,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(비영리업무 포함)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
-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
 - 해당 교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
 - 소속 부서의 기능 및 대학 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
 -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※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·외출·조퇴 등으로 조치
-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
 -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(각 1시간),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,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※ 단,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함
 -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
 - 그 밖에 총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담당직무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(2) 담당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
-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(비영리업무 포함)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
-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교원이 영리업무(비영리업무 포함)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
 - 보조금·장려금·조성금 등을 배정·지급하는 등 금전 보조를 제공하는 경우
 - 인가·허가·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
 -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관계되는 경우
 -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관계되는 경우
 -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지도·감독하는 경우
 - 그 밖에 총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

(3) 대학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- 교원은 대학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

(4) 대학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
-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대학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,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함
- 대학이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, 유흥·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, 여성·장애인·학생·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
- ※ 위 (3), (4)는 직무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판단함

- (5) 영리업무가 위 (1) 내지 (4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원복무규정 제5조의2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
- 다음과 같이 대학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음
 -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(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소지자 포함)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그 밖에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관련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

3. 겸직허가

가. 대상

- (1) 영리업무 : 교원복무규정 제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
- (2) 비영리업무 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

나. 허가기준 :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

- (1) 교직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,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

다. 허가권자 : 총장

라. 절차

- (1) (신청) 해당 교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(수익발생 내역, 겸직 내용, 겸직기간 등 포함)를 <붙임 1> 서식에 의하여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
 -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·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
 -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
- (2) (심사)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교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교원복무규정상 겸직허가 대상인지,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
 -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, 보수,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- (3) (겸직허가 여부 결정) 총장은 해당 교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,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·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
- (4) (결과통보)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
- (5) (겸직허가 취소)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
 -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
 -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제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

○ 그 밖에 총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검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마. 검직현황 조사 실시

(1) 검직실태 조사

-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검직허가를 받은 교원의 실제 검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,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
- 검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

(2) 조사결과 보고

-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
<참고 1> 조사현황표(예시)

겸직허가 현황

○ 겸직현황

(단위: 명, 원)

계	교원	직원
00명		

○ 개인별 겸직현황

(단위: 명, 원)

소속	직위(급)	성명	겸직허가내역			
			겸직기간	겸직기관	직위(직무)	대가(수익)
			년.월.일.~ 년.월.일 (0년 0월)			00만원(월)

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현황

○ 위반현황

(단위: 명, 원)

계	교원	직원
00명		

○ 개인별 위반현황

(단위: 명)

소속	직위(급)	성명	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위반내역			
			겸직기간	겸직기관	직위(직무)	대가(수익)
			년.월.일.~ 년.월.일 (0년 0월)			00만원(월)

<참고 2>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 사례

(기관·단체 임원)

-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: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교직원[自然人]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- 사기업체의 사외이사: 사외이사 겸직은 교직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
 - ※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
- 교직원 친목단체: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 친목단체의 이사회·운영위원회 등 의결·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

(공동주택 입주자 대표, 재건축조합 임원 등)

- 공동주택 등의 관리·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 가능
- 교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·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
-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

(부동산 임대)

- 교직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·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
- 다만, 주택·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·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
 -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

(기 타)

- 저술, 번역, 서적출판, 작사작곡 등
 - 1회적인 저술·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 - ※ (예)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·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
 - 직접 서적을 출판·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(학습지·문제지 등)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
- 야간 대리운전: 교직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
- 블로그 광고
 -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·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 - 블로그 내용이 교직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
-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
 - ※ (예) 다단계 판매업은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